Nov 2026

2026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

국내외 화장품 포장 규제 동향

K·C·A
대 한 화 장 품 협 회
Korea Cosmetics Association



국내외 화장품 포장 관련 제도의 주요 검토 영역

화장품 포장의 원료 선택·용기 설계·배송 단계별로 판매시장에 적용되는 제도와 기준 확인 필요

구분	재생원료 활용	포장 최소화	재활용성 제고
	**재활용의무량 감경 고시** 재생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조정	**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**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	**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**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
	**(오리건주) Oregon Program Plan** 생산자 분담금 인센티브	**(캘리포니아주) SB 54 · 시행규정** 플라스틱 포장 감량	**(캘리포니아주) SB 54 · 시행규정** 포장재 재활용성
	**자원유효이용촉진법** 재생 플라스틱 이용계획·보고	**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**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: 경량화	**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** 가정용 화장품 용기 설계 인정기준: 재활용성
	**PPWR 제7조**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	**PPWR 제24조 제1항** 묶음·운송·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제한	**PPWR 제6조** 포장재 재활용성

본 보고서 업데이트 항목 | 본 보고서 제외 항목

한국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「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

2025년도 사용실적부터 재활용의무량 감경 산정 시 인정되는 재활용원료 사용량 상한을 제품·포장재 출고량의 15%에서 20%로 상향

* 기존 기준은 2022년 5%, 2023년 10%, 2024년 15%로 단계적으로 상향됨

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을 위한 실적서 및 산출 기초자료

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제품 · 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

※ EPR(www.iepr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인	상호	전화번호	법인등록번호
	주소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대표자(개인사업자) 생년월일

자료 제출내용	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	②상품명(규격)	③재활용 원료 사용량(kg)	비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·포장재 재활용원료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제품·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

1. ①란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다.(예: 종이팩, 타이어)
2.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
3.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

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호서식]

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

※ EPR(www.iepr.or.kr)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

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	② 상품명(규격)	재활용원료 사용량		
		계 (A×B)	개당 사용량(A)	연간 출고량(B)
	계			
	제품A			
	제품B			
	제품C			

① 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: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제질란의 제품·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

② 상품명(규격):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

□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

재활용원료 제조업체			구입일자 (연월일)	구입량 (kg)
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 및 연락처		

포장재 Specification 관리

재생원료 함량 데이터 확보

출고 데이터 연계

공급업체 증빙 확보

재생원료 사용실적 산출·검증 체계화

재생원료 사용 여부가 아닌 '실제 사용량'을 산출·증빙할 수 있도록 포장재·출고·구매 데이터를 연결하여 관리 필요

한국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「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」

적용 대상 확인

평균 매출액 등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포장하는 경우,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모두 미적용

① 수송포장 유형별 적용 예외

포장공간비율 미적용, 포장횟수 1차 이내

(최소 크기 포장) 세 변의 합 50cm 이하
※ '26. 4. 20 당시 설치되었거나,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 시, 세 변의 합 60cm 이하까지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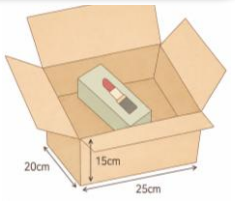

포장공간비율 · 포장횟수 모두 미적용

(합포장·재사용·파손 방지) 판매제품 2개 이상 합포장, 사용한 일회용 수송포장재 재사용, 파손방지 목적의 불가피한 과대포장 시 기준 미적용



② 연성포장에 별도 치수 허용기준 신설

- 배송봉투 등 연성포장은 제품 세 변의 합과 포장재 두 변의 합을 비교하는 치수 허용범위표 적용.
-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 포장재 두 변의 합에 봉합용 길이 50mm 가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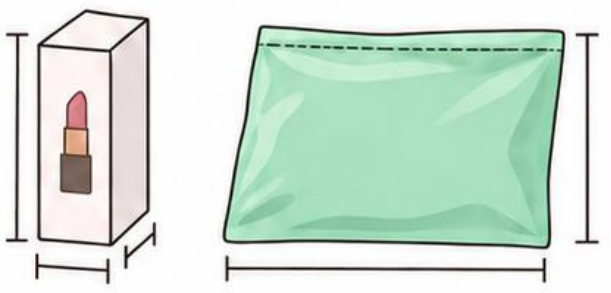

③ 종이 포장재에 별도 기준 신설

포장공간비율 70% 이하

종이 완충재 또는 종이봉투 사용 시 적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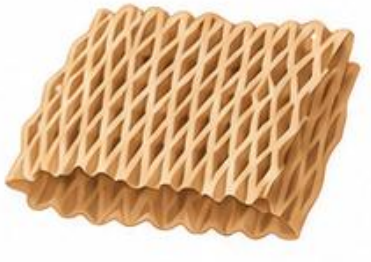

④ 재생원료 20% 이상 연성포장재에 별도 기준 신설

포장공간비율 60% 이하

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20% 이상 함유한 일회용 연성 수송포장재



미국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오리건주 'Oregon Program Plan'

LCA 기반의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 성과에 따라 Bonus A, B, C를 차등 적용함

인센티브 구분	Bonus A	Bonus B	Bonus C
인센티브 측정 기준	포장의 환경영향 측정·공개	기존 포장 대비 환경성 개선	재사용·리필 모델로 전환
산정방식 및 혜택	제품 기본 분담금의 10%	환경영향 저감률에 따라 3개 Tier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	Bonus B와 같은 수수료 Tier 적용 및 재사용·리필 전환의 성과 입증 방식에 따라 경로 구분
인센티브 상한	$20,000	Tier에 따라 차등 적용	입증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

Bonus B, C 상세 기준

Tier 구분	환경영향 저감률	보너스 지급율	보너스 상한 금액
Tier 1	10~40%	20%	$40,000
Tier 2	40~70%	25%	$45,000
Tier 3	70% 초과	30%	$50,000

Bonus C는 Bonus B와 동일한 수수료 Tier를 적용하되, 보너스 지급 경로를 3가지 Option으로 구분하여 운영함

구분	Option 1	Option 2	Option 3
포장재 전환	일회용 → 재사용	일회용 → 재사용	일회용 → 리필
적용 실적	예상 회수율	실제 회수율	실제 리필율
보너스 배수 (Bonus A 기준)	최대 2배	최소 2배	최소 2배
SKU당 상한 금액	$40,000	$50,000	$50,000
지급 기간	3년	3년	1년

미국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캘리포니아주 포장재 생산자책임법(SB 54)

**재활용을 넘어 플라스틱 감축과 생산자 비용 차등화를 연계함으로써,
포장재의 소재·중량·구조·재활용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전환을 유도함**

SB 54가 요구하는 3가지 변화

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	②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 감축	③ 포장 설계에 따른 비용 차등화
2032년까지 모든 Covered Material의 재활용·퇴비화 가능성 확보	2023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단계적 감축	Producer fee + Eco-modulation
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단계적 재활용률 목표 적용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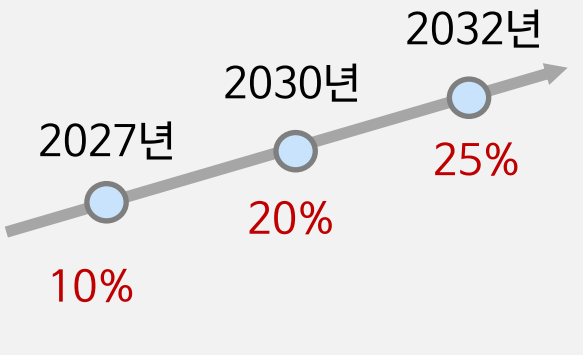	포장재별 관리비용을 생산자 분담금에 반영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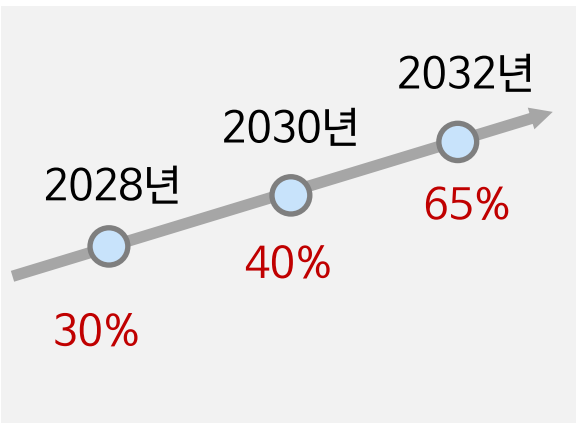	용기 경량화 · 포장 크기 조정 등 다양한 감축 방식 인정*	포장 설계 특성에 따른 Eco-modulation 적용
목표 달성을 위한 재활용 인프라 구축	승인된 산정방식에 따라 PCR 사용 실적을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	라벨·잉크·접착제 등 세부 포장요소도 비용에 반영

* 전체 목표 중 일부는 재사용·리필 전환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, 2032년에는 플라스틱 포장 부품 제거도 이 최소 목표에 포함됨.

일본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「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2026년 4월부터 플라스틱 용기·포장 등의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, 연간 생산·직접 수입판매량 1만 톤 이상 사업자에게 이용계획 제출 및 연간 실적보고 의무 부과

구분	내용	
용기·포장의 대상 범위	① PET병	✓ 음료·주류와 간장·식초 등 지정 조미료에 사용하는 PET병 중 지침 요건을 충족하는 용기
	② 기타 플라스틱제 용기·포장	✓ 대상 플라스틱 용기·포장 중 ①을 제외한 용기·포장
	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	⊗ 지정 PET병 이외의 식음료 용기·포장, 의약품· 의약부외품· 의료기기 등의 용기·포장, 지정 PET 병의 캡·라벨 등
대상 사업자		✓ 대상 용기·포장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, 자기 사업에 사용할 용기·포장의 제조를 발주하는 사업자, 해당 용기·포장에 담긴 상품을 일본에 직접 수입해* 판매하는 사업자 * 경제산업성 지침에서는 일본 화장품 제조사가 해외에 빈 용기를 발주해 직접 수입한 뒤, 내용물을 충전해 판매하는 거래도 수입판매 유형의 하나로 제시함
계획 · 보고 제출기준	최초 제출 대상	✓ 2027년 최초 제출 시, 2025년도 대상 용기·포장의 생산량과 직접 수입판매량을 합산해 1만 톤 이상인 법인이 해당
	1만톤 산정 기준	✓ 내용물을 제외한 용기·포장 무게로 계산 ✓ 생산량에는 자사용 제조 발주분과 일본에서 생산한 수출분 포함
이행 일정		2025년도 실적 → 2027년 9월 → 2028년 9월 생산량·직접 수입판매량 합계 1만 톤 이상 / 최초 이용계획서 제출 / 매년 9월 말까지 이용실적 보고

일본 포장재 관련 규제 핵심 변경사항

「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와 연간 실적을 제조·발주·수입판매 물량별로 구분해 보고하도록 요구

이용계획서

양식 제 1호

목표연도와 재생 플라스틱 이용목표

- **2027년 9월 말**까지 최초 이용계획서 제출
- 제출연도부터 5년 이내 **목표연도 설정** 및 **해당 연도에 사용할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량(t)과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이용률(%)** 기재 필요
- 용기·포장에 재생재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선계획 작성
- 제출한 계획에 변경사항 없는 경우, 기존 목표연도의 9월 말까지 다음 계획 제출

[용기 사양서&예상 납품 수량]

수출 제품에 사용된 용기·포장의 플라스틱 사용량,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및 사용비율 등

정기보고서

양식 제 2호

보고연도와 전년도의 재생 플라스틱 이용실적

- **2028년 9월 말**까지 최초 정기보고서 제출 후, 매년 9월 말까지 이용실적 보고
- **보고연도와 그 전년도의 실제 이용량(t)과 이용률(%)** 기재
-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 설명 필요

[실제 납품분의 용기 사양서와 납품실적표]

완제품별 용기 품번과 포장 구성, 일본향 예상·실제 납품 수량, 용기 사양을 변경한 경우 새 사양의 적용 시점

K·C·A

대 한 화 장 품 협 회

Korea Cosmetics Association

https://kcia.or.kr

2026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